

#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941 |
|----------|------|

2020년 12월 17일  
환경수자원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0년 10월 16일, 정진술 의원 발의
- 나. 회부일자 : 2020년 10월 26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6차  
환경수자원위원회 2020년 12월 17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 설명자: 정진술 의원]

- 가. 제안이유
  -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각종 모임이 제한됨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대관을 취소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

-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‘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’ 권고 의결 (’20. 9. 7.)을 통해 공공시설의 대관료 환불기준을 명확히 하여 대관자에 대한 불공정·불편 요인을 제거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.
- 이에 대관료 환불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상 미비한 대관료 반환 규정 및 그 세부 기준을 신설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골자

- 1) 대관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그 사유를 세분화함(안 제38조제4항 신설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## 4. 검토보고 요지 [수석전문위원 : 이재효]

### 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의결 권고에 따라 대관사용 조건의 불공정 요인을 개선하고 조례상 미비한 대관료 반환 규정 및 세부 기준을 신설하는 것임.

### 나. 검토의견

-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「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」 의결<sup>1)</sup>을 통해 ‘불공정·불편한 대관사용 조건’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음.

#### 〈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〉

| 구 분             | 주요 개선사항  |
|-----------------|--|
| 불공정·불편한 대관사용 조건 | 예약취소 시 특정시점까지 전액반환, 위약 미반환금과 계약 보증금은 10~20% 내로 제한, 허가조건 변경신청 제한 폐지 등 |

- 이에 따르면 국·공유재산 사용료 과오납, 사용 취소·철회 등 사유가 있으면 운영기관은 국·공유재산 법령 등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하지만, 다수의 기관에서 행정규칙 및 조례를 근거로 사용일 이전에 취소하여도 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공제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였음.
- 특히, ‘미반환’을 원칙으로 정할 경우 반환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관자가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는 불공정한 조건이며 재산권 침해로 작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음.

1)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의결, 「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」 의안번호(제2020-419호), 의결일(2020년 9월 7일) 불공정·불편한 대관사용 조건 명시(pp.12-16)

〈'미반환 원칙' 규정 사례(국민권익위원회)〉

| 기 관 명    | 규 정 | 조 문 사 례  |
|----------|-----|--|
| 인천문화예술회관 | 조례  | <b>제17조(사용료의 반환)</b>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 (이하생략)         |
| 예술의전당    | 규약  | <b>제5조(대관료)</b>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(생략) |

- 또한, 선납액 일체 미반환 등 과도한 공제는 일반계약의 평균 10% 위약금 수준과 특정일까지 전액을 반환하는 규정과 배치되어 불공정 거래로 지적 되었으며, 선납금의 경우에도 공공기관 및 민간계약의 보증금 수준(10%)과 달리 과도한 보증금(30~50%)을 요구하는 사례는 운영자에 편향된 사용료 납부방식이기 때문에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음.

〈'사용료 선납방식 현황' 규정 사례(국민권익위원회)〉

| 기 관 명    | 시 설  | 납 부 방 식   |
|----------|------|---|
| 인천문화예술회관 | 대공연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계약금: 승인통보 후 총액 50%</li> <li>▪ 잔 금: 사용예정일 30일 전 총액 50%</li> </ul>     |
| 세종문화회관   | 대극장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계약금: 승인통보 후 9일내 총액 30%</li> <li>▪ 잔 금: 사용예정일 90일 전 총액 70%</li> </ul> |

-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대관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사유를 세분화하는 것으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.

〈본 일부개정조례안 반환기준〉

**제38조**

- ④ 대관자가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
1.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: 대관료 전액 반환
  2.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: 대관료 전액 반환
  3. 사용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: 대관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
  4.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: 대관료의 100분의 10과 사용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수정안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3항 본문 중 “대관자”를 “대관 허가를 받은 자(이하 “대관자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행사일”을 “사용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대관자가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

1.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: 대관료 전액 반환
2.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: 대관료 전액 반환
3. 사용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: 대관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
4.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: 대관료의 100분의 10과 사용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

⑤ 대관료 등의 징수, 감면 및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른 징수, 감면기준, 반환 등을 준용하여 해당 요금 등을 부과·징수하거나 반환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p>제38조(생태학습관 등의 운영) ①<br/>· ② (생 략)</p> <p>③ <u>대관자</u>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<u>행사일</u>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 | <p>제38조(생태학습관 등의 운영) ①<br/>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대관 허가를 받은 자(이하 “대관자”라 한다)</u>-----<br/>-- . -----<br/>-----<br/>----- <u>사용일</u> -----<br/>-----.</p> <p>④ <u>대관자가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: 대관료 전액 반환</u></li> <li>2. <u>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: 대관료 전액 반환</u></li> <li>3. <u>사용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: 대관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</u></li> <li>4. <u>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: 대관료의 100분의 10과 사용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</u></li> </ol> |

④ 대관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른 징수 및 감면기준 등을 준용하여 해당요금 등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⑤ 대관료 등의 징수, 감면 및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른 징수, 감면 기준, 반환 등을 준용하여 해당요금 등을 부과·징수하거나 반환할 수 있다.